

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신설 2023. 6. 27.>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13조의2 관련)

1.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(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하며,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
2.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$$\text{과징금 부과금액} = \text{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} \times \text{업무정지 일수} \times 0.13$$

3. 제2호의 계산식 중 ‘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’은 위반행위를 한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4.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.